고충처리위원회운영규칙

제정 2012. 08. 28. 개정 2020. 09. 29.

- 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한국콘텐츠진흥원 고충처리위원회(이하 '위원회'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- 1. 근무 환경, 근무조건 개선에 관한 고충사항
 - 2. 직원의 복지증진에 관한 고충사항
 - 3. 직원의 교육 훈련에 관한 고충사항
 - 4. 직원의 대외 업무수행에 관한 고충사항 〈신설 2020.09.29.〉
 - 5. 기타 고충사항 〈조항이동 2020.09.20.〉
- 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노사가 각 추천한 1인과 노사 협의로 추천한 여성 위원 1인 등 총 3인의 고충처리 위원(이하 '위원'이라 한다)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20.09.29.>
 - ② 위원회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, 위원회가 내부 고충처리 안건을 심의할 때의 간사는 인사담당 부서장으로, 대외 고충처리 안건을 심의할 때의 간사는 대외 고충처리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. <신설 2020.09.29.>
 - ③ 간사는 고충접수, 회의의 의안작성, 회의록, 기타 관련서류의 작성과 보관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. 〈조항이동 2020.09.29.〉
- 제4조(회의)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안이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.
 - 1.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
 - 2. 고충이 접수되었을 때
 - 3.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
- ② 위원회의 의사는 만장일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③ 위 제2항의 의결의 불가하거나 위원회에서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은 노사협의회 회의에 부쳐 협의 처리한다.
- 제5조(위원회의 출석) ① 위원은 필요에 따라 부의사항과 관계되는 직원을 출석시켜 증언을 듣거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 - ② 위원회의 부의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당해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.
- 제6조(회의록) 위원회는 고충사항접수 및 처리대장(별표 제2호 서식)을 작성 하여야 하며, 회의록은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·날인하여야 한다.
- 제7조(회의의 비공개) 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, 참석 위원은 회의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제8조(심의사항 보고)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제9조(위원의 임기와 처우) ① 고충처리 위원은 비상임, 무보수로 한다.
 -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 - ③ 고충처리위원회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위원에 대해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④ 위원은 해당 양식(별지1호 서식)에 따라 지방노동청에 선임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.
 - ⑤ 위원이 고충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본다.
- 제10조(고충처리 절차) ① 고충처리 업무를 처리는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.
 - 1. 위원회는 고충처리를 위해 상담실을 설치 운영 할 수 있다.
 - 2. 직원이 내부 고충처리 신고 시 위원 또는 고충처리 상담실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하며, 대외 고충처리 신고 시 양식(별지 3호 서

- 식)에 따라 작성 후 대외 고충처리 위원회에 신고한다. <개정 2020.09.29.>
- 3. 신고 된 고충사항 중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원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.
- 4. 고충사항 접수 후 7일 이내에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거나 회의 소집이 불필요한 경우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- 5. 위원회는 접수된 고충사항에 대해 10일 이내에 처리결과 또는 진행 상황을 신고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.
- 6. 제5호에도 불구하고 대외 고충사항에 대해서는 1개월 이내에 처리결 과를 신고자에게 회신할 수 있다. <신설 2020.09.29.>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처리된 사항에 대해서도 이 규칙에 준하여 적용된 것으로 한다.

부 칙(2020.09.29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처리된 사항에 대해서도 이 규칙에 준하여 적용된 것으로 한다.

	고충처리위원선임신고서														
사업	를 또는 A	l 업장명				נ	H 3	표 자							
소	재	지					ī	<u>'</u> 로자수	명(ኒ	: :	여	:)		
업		종					で] 화번호							
고 선	충 처 리 임 _ 일	위 원 <u></u> 사						사협의회 치 여부							
고충	·처리 상	·담실													
고	근	로	자	측			시	- 9	자	측					
구 충 처 리 위	직 책	성 별	연 령	성	명	직 :	책	성 별	연 령	ý	넝	명			
원															

위와 같이 노사협의회법 제24조, 제25조,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충처리위원을 선임(위촉)하였음을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 고 인:

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귀하

고 충 사 항 접 수 및 처 리 대 장

접 수	고 -	충 인	고 충	처 리	회 신	위 원
일 자	성 명	소속 부서	내 용	결 과	일 자	확 인
		省 T ol 7l.	ol 7l.		십 T 고 중 시 디	십 구 고 중 저 디 외 신 이 기 의 기 의 기 의 기

(별지 제3호 서식) <신설 2020.09.29.>

대외고충처리담당부서장											
성명	서명										

			T	1	외	고	き	きえ	-	리	신	卫	入	}				
	소	속																
신고자	직	급																
인적사항	성	명																
	연락	차																
고충내용	(상*	ᆌᄒ	기술)														
	위	와 🤻	같이	고충	충사형	항을	신고	2하오	익	처리	하여	주	시기	바투	랍니다	다.		
								년		월		일						

(서명)

(신고인)